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29 선고 2020가단66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김성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

변론 종결 2021. 3. 11

판결 선고 2021. 4. 29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3,6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6. 5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요지

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'D' 룸살통(이하 끼 사건 주점'이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직원(부장)인데,피고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12회에 걸쳐 이 사건 주 점을 이용하면서 술값 및 봉사료 합계 34,200,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이에 원고가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33,600,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33,600,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2. 판단

피고가 자신의 외상사실이나 그 액수를 인정하는 진술이나 그러한 취지로 작성해 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입급표(갑 제1호증), 명 세서(갑 제2호증), 외상장부(갑 제3호증) 및 원고와 같이 근무한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 인서(갑 제4호증)만으로 '피고가 이 사건 주점 혹은 원고에 대하여 술값 및 봉사료로 34,200,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'거나 '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위 금액 상당 의 주류 등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'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[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9. 10. 15. 혐의없음 결정(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2019형 제26142호)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한다.

판사 문경훈